|  |  |  |
| --- | --- | --- |
| **공상총국의 <상표평심 사건 구두심리(審理) 방법> 공표에 관한 공고**  공상판자[2017]65호  상표평심 원활화 개혁을 한층 더 촉진시키고 상표평심 사건의 구두심리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상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상표평심규칙>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평심 사건 두구심리(審理) 방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공상총국  2017년 5월 4일  제1조 상표평심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판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상표평심규칙>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사건 심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평심 사건에 대한 구두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상표평심 사건의 당사자는 관련 증거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즉석 대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상표평심위원회에 구두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시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구두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두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구두심리를 청구하였으나 서면자료만으로도 사건의 사실을 판명하기에 충분한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구두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와 더불어 평심결정문•재정(栽定)문에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수 있다.  제4조 구두심리를 청구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평심 신청 제출과 동시에 또는 늦어도 피신청인의 답변서 부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구두심리 신청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두심리를 청구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 시 또는 관련 증거자료 보충 시 상표평심위원회에 구두심리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사건 심리의 실제 수요에 따라 직권에 의거하여 상표평심 사건에 대한 구두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상표평심위원회는 구두심리를 결정한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두심리의 일자, 장소, 합의부 구성원, 구두심리 절차, 구두심리 참가자의 권리•의무 등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구두심리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두구심리통보서 수령증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의부 구성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령증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수령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구두심리에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당사자가 구두심리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석심리 진행 또는 구두심리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7조 구두심리에 참가하는 각 당사자의 출석인원은 대리인을 포함하여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상표평심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구두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상표평심위원회는 사무공간, 공식 웹사이트 또는 신문지, 정기간행물에 구두심리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구두심리 업무는 사건을 담당한 합의부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합의부는 3명 이상의 홀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부 부장 한명을 둔다.  제10조 구두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합의부는 구두심리 참가인원의 신분정보와 구두심리 참가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구두심리 현장 준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구두심리는 합의부 부장이 진행을 담당한다. 합의부 부장이 구두심리 시작을 선언한 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구두심리 조사를 진행한다.  (1) 합의부 구성원이 사건의 개요와 사건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설명한다.  (2) 신청인이 평심 청구취지를 진술한다.  (3) 피신청인이 답변한다.  제12조 구두심리 시 당사자는 평심 절차에서 그가 제출했던 모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대질질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당사자는 대질 과정에서 증거의 진실성•연관성•적법성, 증거능력의 유무, 증명력의 강약을 둘러싸고 질의, 설명 및 논박하여야 한다.  대질은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진행한다.  (1) 신청인이 증거를 제시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대질한다.  (2) 피신청인이 증거를 제시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대질한다.  제14조 상표평심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증인을 구두심리 현장으로 소환하여 증언하도록 할 수 있다. 증인은 구두심리를 방청할 수 없다. 증인 질문 시 현장에 기타 증인이 같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합의부 구성원은 해당 사실 및 증거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질문하거나 해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대질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의부의 동의를 거친 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16조 구두심리를 마치기 전에 합의부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순서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의견 진술이 끝난 후 구두심리를 마친다.  제17조 구두심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허가 없이 중도에 심리 현장을 떠나거나 구두심리를 방해함으로써 합의부의 명령에 의해 심리 현장에서 퇴출당한 경우 합의부는 결석심리할 수 있으며 심리 현장에서 퇴출한 사실을 기록한 후 당사자 또는 합의부가 확인서명한다. 모든 당사자가 구두심리 현장에서 퇴출한 경우 구두심리를 종료한다.  구두심리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화해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화해 의사를 표명한 경우 구두심리를 종료한다.  제18조 서기 또는 합의부 부장이 지정한 합의부 구성원은 구두심리의 중요 사항을 구두심리 서면기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합의부는 서면기록 외에도 녹음•녹화 설비를 사용하여 구두심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구두심리가 끝난 후 합의부는 서면기록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면기록에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서면기록에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후 당사자가 서명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합의부가 구두심리 서면기록에 해당 상황을 기록한다.  제19조 구두심리 시 상표평심위원회의 허가 없이 방청, 사진촬영, 녹음 및 녹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이 방법에서 언급된 '당사자', '피신청인'은 등록신청 기각 재심 사건의 원(原) 이의신청인을 포함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  | **工商总局关于发布《商标评审案件口头审理办法》的公告**  工商办字〔2017〕65号  　　为进一步推进商标评审便利化改革，规范评审案件口头审理程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商标评审规则》等有关规定，工商总局制定了《商标评审案件口头审理办法》。现予以发布，自发布之日起施行。  　　特此公告。  　　 工商总局  　　2017年5月4日  　　第一条 为了查明商标评审案件的有关事实，依据《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商标评审规则》，制定本办法。  　　第二条 商标评审委员会根据当事人的请求或者案件审理的需要，可以决定对商标评审案件进行口头审理。  　　第三条 商标评审案件当事人对案件有关证据存在疑问，认为应当进行当场质证的，可以向商标评审委员会请求进行口头审理。请求应当提出书面申请，并说明理由。商标评审委员会认为确有必要的，可以决定进行口头审理。  　　当事人请求进行口头审理，但根据案件书面材料已足以查明案件事实的，商标评审委员会可以决定不进行口头审理，并在评审决定、裁定中予以说明。  　　第四条 申请人请求进行口头审理的，应当在提出评审申请时或者最晚自收到被申请人的答辩书副本之日起三十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被申请人请求进行口头审理的，应当在向商标评审委员会提交答辩书或者补充有关证据材料时一并提出。  　　第五条 根据审理案件的实际需要，商标评审委员会也可以依职权决定对评审案件进行口头审理。  　　第六条 商标评审委员会决定进行口头审理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告知口头审理的日期、地点、合议组组成人员、口头审理程序、口头审理参加人的权利义务等事项。  　　当事人应当自收到口头审理通知之日起10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提交口头审理回执。申请合议组组成人员回避的，应随回执一并提出，并说明理由。  　　当事人期满未提交回执的，视为不参加口头审理。有关当事人不参加口头审理的，商标评审委员会可以决定缺席审理或者取消口头审理。  　　第七条 参加口头审理的各方人员，包括委托代理人，不应超过两人，但经商标评审委员会同意的除外。  　　第八条 口头审理进行前，商标评审委员会应当在办公场所、官方网站或者报纸、期刊上对口头审理案件的有关信息予以公告。  　　第九条 口头审理工作由承办案件的合议组负责，合议组应当由三人以上单数组成，设合议组组长一名。  　　第十条 口头审理开始前，合议组应当核对口头审理参加人员的身份信息，确认其参加口头审理的资格，并宣布口头审理纪律。  　　第十一条 口头审理由合议组组长主持。合议组组长宣布口头审理开始后，口头审理调查按照以下顺序进行：  　　（一）合议组成员介绍案件基本情况，明确案件争议的主要问题；  　　（二）申请人陈述评审请求；  　　（三）被申请人答辩。  　　第十二条 当事人应将其在评审程序中提交的全部证据在口头审理时出示，由对方当事人质证。  　　第十三条 当事人在质证时应当围绕证据的真实性、关联性、合法性，对证据证明力有无以及证明力大小，进行质疑、说明与辩驳。  　　质证按照下列顺序进行：  　　（一）申请人出示证据，被申请人与申请人进行质证；  　　（二）被申请人出示证据，申请人与被申请人进行质证。  　　第十四条 经商标评审委员会同意，口头审理可以请证人到场作证。证人不得旁听口头审理。询问证人时，其他证人不得在场。  　　第十五条 合议组成员可以就有关事实和证据向当事人或者证人提问，可以要求当事人或者证人作出解释；必要时，可以要求证人进行对质。  　　当事人经合议组许可，可以询问证人。  　　第十六条 口头审理结束前，由合议组按照申请人、被申请人的先后顺序征询各方最后意见陈述。最后意见陈述后，口头审理结束。  　　第十七条 口头审理过程中，有关当事人未经许可中途退出审理的，或者因妨碍口头审理进行被合议组责令退出审理的，合议组可以缺席审理，并就退出审理的事实进行记录，由当事人或者合议组签字确认。各方当事人均退出口头审理的，口头审理终止。  　　口头审理过程中，双方当事人达成和解协议或者有和解意愿的，口头审理终止。  　　第十八条 书记员或合议组组长指定的合议组成员应当将口头审理的重要事项记入口头审理笔录。除笔录外，合议组还可以使用录音、录像设备进行记录。  　　口头审理结束后，合议组应将笔录交当事人核实。对笔录的差错，当事人有权要求更正。笔录核实无误后应当由当事人签字并存入案卷。当事人拒绝签字的，由合议组在口头审理笔录中注明。  　　第十九条 口头审理时，未经商标评审委员会许可不得旁听、拍照、录音和录像。  　　第二十条 本办法所称“当事人”、“被申请人”包括不予注册复审案件中的原异议人。  　　第二十一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实施。 |